

IFRS에 의한 공정가치 측정의 한계점과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황 준 성*

요약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자본시장으로부터 저렴한 자본비용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등 국제시장에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현행 국내회계기준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그 중 공정가치 측정이라는 속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이 공정가치 측정의 한계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기준의 도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가치 측정이라는 속성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점으로는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의 저하와 공정가치 측정 과정에서 개입되는 주관성 및 시장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주관이 개입되는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적절한 공시가 필요하며,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외부평가자의 적격성과 독립성 확보 및 감독기구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IFRS, 공정가치 측정

I. 서론

세계시장이 하나의 자본시장화 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계속해서 발

* 공인회계사, hwangjsung@kicpa.or.kr

표해 나가고 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움에 따라 기업의 소속국가와는 상관없이 재무제표의 정보가 서로 비교가능 하도록 회계처리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은 이러한 세계화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과거 회계처리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달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의 회계에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추구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실무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기준의 도입에 대한 배경과 도입에 앞서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공정가치측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FRS의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 도입국가의 증가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에는 유럽연합, 호주 등 100여 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나라도 2011년에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내의 모든 상장기업의 IFRS 적용의무 법률을 제정하였고, 미국은 Norwalk Agreement라는 US GAAP와 IFRS의 일치 및 호환에 관한 선언을 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 및 OECD 가입국 중에서는 4/5가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회의는 유럽의 정규시장 내의 모든 기업이 2005년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IFRS의 적용을 의무화 하였고, 2007년 6월 유럽증권감독위원회는 EU 가입국 이외 제3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증하는 절차방안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2002년 6월 Norwalk Agreement라는 US GAAP와 IFRS의 일치 및 호환에 관한 선언을 하였으며, 2007년 7월에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내 상장하고 있는 외국기업 중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US-GAAP과의 차이조정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 상장된 미국기업과 외국기업은 US-GAAP과 국제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로서 2005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다는 결정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전체적인 도입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회계시스템의 변경과 개선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상장기업에 적용한다고 2006년 2월 발표했으며, Basic Standard 및 구체적인 회계기준서 38개를 공표하였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핵심원칙만을 도입하여 유형자산의 재평가 등 일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2002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였고,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적용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보여 현재 시스템의 재구

축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일본회계기준위원회는 일본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합의하고 Whole picture approach를 취하였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2011년 까지 수행할 것이다.

국제기준은 기존의 기준서가 회계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제시한 것에 비해 오히려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여 회계처리담당자가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에게 기업의 상황을 현실에 맞게 보여주기 위해 자산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규제중심 회계기준으로 분류되는 반면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여 획일화된 회계처리방법을 유도하기 보다는 회계처리의 원칙과 방법론 제시에 의해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회사의 판단을 중시한다. 또한 각 기준서와 회계처리의 원칙은 재무회계 개념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 기준서상 불분명한 부분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원칙중심의 방법은 규제중심의 회계기준에 비해 급격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의 허용에 의해 실무적용의 혼란과 회계처리 일관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특유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 및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도입초기에 전산시스템이나 기존 ERP 정비 등 실무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국제적인 기준의 도입으로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자본시장으로부터 저렴한 자본비용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회계기준과 IFRS의 주요 차이를 살펴보고 공정가치 측정의 한계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해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국내회계기준과 IFRS의 주요차이

현행회계기준이 규정중심으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한 것에 비해 국제회계기준

은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회계처리방법에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에 맞는 실질적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회계기준과 현행회계기준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권성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정배경 및 내용개관”, 한국공인회계사회, pp.76-84)

<표 1> IFRS와 현행 회계기준의 차이 개요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회계처리 원칙	원칙중심, 회계처리 선택권 넓게 허용	규정중심으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공
공시체계 차이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함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차이	공정가치 평가 강조	객관적 평가 어려운 항목들은 취득원가 평가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 회계처리를 요구

이하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현행회계기준과의 주요한 차이점을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결범위에 포함된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소유 지분율이 50%이하이고 의사결정기구 과반수 요건 등 다른 명시적인 지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유 지분율로 현실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 지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또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연결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2> 연결재무제표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지배요건	현실적인 지배력 기준	소유지분율 50%초과소유, 의사결정기구 과반수 이상 요건 등

2. 공정가치 측정범위의 확대

국제회계기준은 현행보다 공정가치 정보제공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가치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근거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비상장기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사업결합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보험부채, 퇴직급여채무, 매각예정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표 3〉 공정가치 측정범위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공정가치 측정범위	유형자산의 재평가, 비상장기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사업결합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보험부채, 퇴직급여채무, 매각예정부동산과 투자부동산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3. 재무제표의 종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소급 작성 시 가장 이른 기간의 비교기간 기초 재무상태표를 재무제표로 구성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종전의 손익계산서는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한 포괄손익계산서로 대체되며, 재무제표는 필수적으로 구분하여야하는 몇 가지 항목 외에는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시 양식의 선택이 가능하며, 재무상태표의 유동성/비유동성 구분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재무제표 표시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재무제표 구성 및 명칭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식 - 회계변경 등에 따라 소급적용시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 - 주식
재무제표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에 표시할 최소한의 계정과목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양식 제시 - 금융업 별도 기준서 적용
중간재무제표에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재무제표는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34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제표의 동일양식 작성이 원칙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재무상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비유동성 구분 및 유동성배열법 모두 가능 - 처분예정자산·부채 및 중단사업자산·부채는 별도 표시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성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비유동성으로 구분하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 - 처분예정자산·부채에 대해서 별도 표시하지 아니함.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성과 비유동성으로 구분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별 분류방법과 기능별 분류방법 중 선택 - 영업손익의 구분을 규정하지 아니함. - 소수주주 및 지배회사 지분에 대한 당기순손익 배분내용 표시 - 기능별분류방법 -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 - 소수주주 및 지배회사 지분에 대한 당기순손익 배분내용 표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별분류방법 -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 - 소수주주 및 지배회사 지분에 대한 당기순손익 배분내용 표시안함

4. 기타 기준서별 차이

(1) 금융상품

현행 기준은 금융자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양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현행 기준은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발행자가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금액의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나 보유자가 미래 특정시점 혹은 그 이후에 특정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채로 분류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련 정보 공시 및 위험요소별 광범위한 주식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준은 예상손실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인식할 수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손상사건이 발생하여야 대손충당금을 인식할 수 있으며, 예상손실에 의해 대손충당금의 인식은 금지된다. 또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의 차이가 있으며, 금융자산의 매각에 대하여 매각으로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조합출자금의 경우 지분상환의 거절권리가 있어야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차이가 있다.

〈표 5〉 금융상품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발행자의 상환우선주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 	- 자본으로 분류
금융자산의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한 경우 - 단기매매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금융부채의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금융부채 - 기타부채 	- 규정 없음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대손충당금은 발생기준에 의해서만 인식. 예상손실, 최저적립액 등에 의한 충당금은 인정하지 않음	- 과거 경험률에 의한 방법, 예상손실이 감안된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방법 등 적용 가능
금융자산의 매각	- 금융자산의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등 특정 요건 충족시 매각거래로 인식. 받을어음 할인, SPC에 대한 채권매각이 불인정될 가능성	- 자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일정요건 모두 충족시 매각거래로 인정
조합 출자금의 분류	- 조합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져야만 자본으로 분류	- 조합원 지분에 대한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 여부 상관 없이 자본으로 분류

(2) 보험계약의 회계처리

현행 기준은 보험계약으로부터의 보험료수입은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보험계약에 저축요소와 보장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축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리하여 부채로 인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은 보장부분을 재량적 참가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표 6〉 보험료수익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보험료 수익의 회계처리	보험계약에 저축요소와 보장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축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리하여 부채로 인식할 것을 선택	수익으로 처리

(3) 지분법의 증대한 영향력 판단기준

현행 기준은 투자회사가 직접 증대한 영향력을 보유했는지 또는 종속회사나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에 의해 증대한 영향력을 보유했는지를 판단하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투자회사의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로만 증대한 영향력 유무를 판단한다.

또한 지분법의 적용시 종속기업은 연결을 적용하고 공동지배회사는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며 관계기업의 경우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를 지분법 적용하는 현행기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지분법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증대한 영향력 판단	- 직접 또는 간접(예 :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의결권 20% 이상 소유	- 직접 또는 지배·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지분법 적용	- 종속기업 : 연결 - 공동지배대상회사 :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 관계기업 : 지분법	- 종속기업 : 지분법 - 공동지배대상회사 : 지분법 - 관계기업 : 지분법
투자차액	- 단계법 : 단계적 취득으로 증대한 영향력 획득시 취득시점별로 투자차액 인식	- 일괄법 : 증대한 영향력 획득시점에서 일괄하여 투자차액 인식

(4) 재고자산의 평가

현행 기준은 재고자산에 대해 후입선출법 평가를 인정하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재고자산평가지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표 8〉 재고자산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재고자산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함. - 후입선출법을 허용

(5) 채권·채무조정

현행 기준은 채무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채무의 연속으로 보아 역사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표 9〉 채권채무 조정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채권채무조정 측정	공정가치로 평가	역사적할인율로 평가

(6)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현행 기준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표 10〉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자산의 인식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

(7) 건설형공사계약

현행 기준은 초과미성공사 및 초과공사대금청구 계정은 대차대조표에 별도 표시되지 않으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초과미성공사는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초과공사대금 청구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한다.

〈표 11〉 건설형공사계약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초과미성공사, 초과공사대금청구	각각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로 인식	미인식

(8) 총당부채

현행 기준은 총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원유출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여 부채인식을 확대한다.

〈표 12〉 총당부채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총당부채의 인식범위 확대	-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50% 이상) 경우	-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상) 경우

(9) 특수관계자

현행 기준은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금액과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채권의 장부금액을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주식 공시 요구는 없다.

또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은 지배·종속관계를 실질적인 지배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관계기업여부는 투자기업의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한 간접지분을만 포함하여 결정하고 개인의 가까운 가족만을 포함한다.

〈표 13〉 특수관계자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주석공시	주석공시요구 없음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수, 취득원가 등을 주석공시

(10) 생물자산의 회계처리

국제회계기준은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수확물을 ‘공정가치-판매비용 추정액’으로 측정하며,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에서 발생한 차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공정가치에서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하여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수취한 시점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표 14〉 생물자산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측정	공정가치-판매비용 추정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준용

(11) 금융리스분류의 판단기준

현행 기준은 금융리스 분류기준의 양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경영자의 실질판단에 의존한다.

〈표 15〉 금융리스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금융리스의 양적 판단기준	- 기준서에는 분류 원칙(예: 내용연수의 상당부분, 공정가치의 대부분 등)만 제시하고 양적 판단지침이 없으며, 경영자의 실질판단에 의존	- 금융리스 분류의 양적 판단지침(예: 내용연수의 75%, 공정가치의 90% 등)을 제시

(12) 자산감액

현행 기준은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

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시점, 빈도와 자산손상의 지표를 규정하고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여 영업권을 배분한 후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엄격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표 16〉 자산감액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엄격한 자산손상 평가	-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시점, 빈도와 자산손상의 지표를 규정하고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여 손상검사 실시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감액손실 인식, 구체적인 지침 규정은 없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17〉 기 타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유·무형 자산의 재평가 허용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 - 유형자산 분류별(예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로 동일한 모형 적용 - 재평가잉여금은 자본잉여금으로 표시하고 처분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능(당기손익 반영할 수 없음)	- 원가모형만 허용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검토	-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이 발생할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 재검토 의무 없음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 내용연수가 한정적인 것과 비한정적인 것으로 구분.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음.	- 법률 또는 계약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퇴직급여 채무의 측정	-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	-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하여, 전임직원이 일시 퇴직시 지급할 금액을 인식
단기종업원 급여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채무를 인식	-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관련채무를 미인식
수익인식의 조건	-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50% 이상) 경우	-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상) 경우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영업권의 평가	-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수행	- 20년 이내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상각
포인트·마일리지의 회계처리	- 보상점수를 부여한 매출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수익인식기준을 각각 적용. 보상점수에 배분된 수익은 이연하여 처리 (IFRIC 13 고객충성제도)	- 매출한 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
기능통화의 개념	-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와 보고통화 개념을 구분	- 기능통화의 개념 사용하지 않음
금융비용 자본화	- 적격자산 관련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의무화	- 적격자산 관련 금융비용을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자본화 또는 기간비용 처리 가능

III. 공정가치 측정의 한계점 및 대응방안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간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판매하고 수령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고 지급할 가격으로 정의한다. 즉, 공정가치의 주요 속성으로 ‘유출가치’를 주장한다. 유출가치는 자산으로 인한 현금유입, 부채로 인한 현금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행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측정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이하에서 유럽의 공정가치 측정상황을 검토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유럽의 공정가치 측정 상황

유럽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관심이 크지 않았으며 감사인 또한 공정가치 측정용 해오지 않고 있었으므로 공정가치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기업과 감사인 외에 평가전문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했다.

유럽에서는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 회계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회계처리의 효익 대 비용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기업은 IFRS No.3에 따라 영업권과 무형자산을 분리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즉, IFRS No.3에 따라 식별하는 고객관련 무형자산, 계약관련 무형자산 및 상표권 등이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기준서 준수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의 데이터에 의하면 무형자산이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없으므로 분리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많은 금융상품에서 확인가능한 시장가치가 존재하거나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자료가 존재했다. 은행의 경우는 정립된 정교한 모형이 있으며 사후검증 및 필요한 조정을 수행했고, 일반 기업의 경우 모형을 사용하거나 거래 상대방은행의 평가보고서에 의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EU 3개국 4개 은행의 IFRS 적용 2006년 재무제표 주식 검토 결과, 시장가격이 사용가능한 경우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그렇지 않은 경우 가치평가모형을 이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이용하였다고 공시하였다.

EU 10개국 199개 기업의 IFRS 적용 2005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유형·무형자산,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선택 옵션 및 그 적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대부분(98%~100%)의 기업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는 58%의 기업이 공정가치모형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공정가치 평가의 필요성

공정가치 정보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과거의 가격이 아닌 현행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경영진의 의도와 무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적합하며 이해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공정가치 정보는 현행시장상황을 반영하므로 금융상품의 가치를 비교가능하게 하며, 연계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상이한 측정속성 적용에 따른 이익의 변동가능성을 방지한다.

3. 공정가치 측정의 한계점

(1)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공정가치 측정의 확대는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목적적합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2) 비교가능성 저해

동일한 산업내의 동일한 성격의 거래가 다른 방법에 의해 측정되고 공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가능성 있다.

(3) 주관의 개입

공정가치 평가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와 감사인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4) 시장정보 수집의 어려움

시장가치가 공정가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가치가 없는 자산과 부채가 다수 존재하며, 공정가치의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상품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규모와 효율성이 선진국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상품을 시장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 즉 원활한 실제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상품을 측정할 때 투입정보를 이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의 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비금융상품의 경우 보유의 목적자체가 매각이 목적이 아닌 사용이 목적임에도 유출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4. 공정가치 측정의 사례검토

2008년 1월 1일 5,000,000원에 최초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가 10년(잔존가치 0)일때 2008년 말과 2009년 말의 재평가액이 각각 9,000,000원과 2,000,000원인 경우 2007년 재평가감소액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금액은 얼마인지 살펴보자. 이때 자본에 반영된 재평가 증가분은 관련자산의 상각이 진행됨에 따라 실현시켜주는 것으로 한다. 또한 2009년 말의 가치하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감액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한다.

〈표 18〉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내역	2008년말	2009년말
감가상각전 장부가액	5,000,000	9,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	1,000,000
장부가액	4,500,000	8,000,000
재평가액	9,000,000	2,000,000
대차대조표(자본) 해당액	4,500,000	(-)4,000,000
손익계산서 해당액	-	(-)2,000,000

〈표 19〉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내역	2008년말	2009년말
감가상각전 장부가액	5,000,000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	1,000,000
장부가액	4,500,000	4,000,000
재평가액	-	-
대차대조표(자본) 해당액	-	-
손익계산서 해당액	-	-

사례에서와 같이 현행 기업회계기준 하에서의 장부가액과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장부가액은 그 내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시장가치의 변동을 장부에 즉시 반영하여 보여줌으로써 시장변동을 장부에 현실감 있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5. 공정가치 측정의 한계점에 대한 대응방안

첫째, 공정가치 평가모형의 적용에서 회사와 감사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기 위해 공정가치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의 존재 여부, 평가치 변동의 민감도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

둘째, 실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는 많은 가정과 일관된 측정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공정가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결과의 활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가치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독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즉, 감독기구는 평가와 관련된 공시내용, 평가자의 자격요건 검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하여 사전적인 감독 방안과 사후적인 감독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사전적인 감독방안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연구에서 검토된 ‘시장자율방식’과 ‘공적규제방식’이 있는데, ‘시장자율방식’은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이 평가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공적규제방식’은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요건 및 감독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감독기구가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적인 감독방안으로는 공정가치 평가관련 공시에 대한 신속한 스크린 실시 및 정정을 통하여 평가방법, 평가근거 등에 대해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과 감사인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감사절차를 점검하는 등 품질관리 감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감독기구는 이러한 절차들이 시장의 마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 후 실시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공정가치 측정은 시장의 변동성을 재무제표 상에 인식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가치에 대한 회계정보의 산출에 대하여 기업은 일차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인 또한 그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국내 회계의 발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국제회계기준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공정가치평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국제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국제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의 해석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기업내부와 외부의 감독기관은 감독을 해야 한다.

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기업경영자와 이해관계자의 국제적인 시각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경영의 전략과 운영이 국제화 되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회계시장의 국제화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선진시장으로 진입시키는데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회계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도입에 많은 절차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확인해볼 때 우리 또한 도입 전에 도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반적인 회계와 공시시스템, 감사인의 감사시스템 및 감독당국의 감독시스템 등 관련된 시스템 모두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적자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제회계기준 수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스템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시스템적인 구조조정의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성수, 200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정배경 및 내용개관”, 공인회계사 1월호, 한국공인회계사회, 76-84.
- 딜로이트, 2007, IFRS 최초 도입가이드.
- 배지현, 2006, 국제회계기준.
- 서정우, 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기업의 대응전략”, 한국회계기준원.
- 서정우, 문점식, 김정국, 2003, “회계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능동적 전략”, 한국회계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4호.
- 송인만, 2008,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며”, 공인회계사 5월호, 한국공인회계사회, 18-24.
- 오준환, 김호중, 김성남, 2006,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 수용수준, 대상 및 시기의 결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15(2), 31-58.
- 이용수, 2007,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 우정정보 제70권, 우정경영연구소.
- 장지인, 정운오, 2001, “회계기준제정을 위한 준거원칙으로서의 국제적 정합성”, 회계저널 10(2), 139-158.

정혜영, 김문철, 안영균, 2005,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정립방향 :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과 대책” 한국회계학회 연구보고서.

Ball, Ray, 2006,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Pros and Cons for investor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Schipper, K., 2005,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Europ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nvergence,” *Epean Accounting Review*, 14(1), 101-126.

Van Tendeloo, B. and Vanstraelen, A., 2005, “Earnings management under German GAAP versus IFRS,” *European Accounting Review*, 14(1), 155-180.

<http://www.samili.com>

<http://www.iasb.org>

The Limit of Fair Value Measurement by IFRS and Policy of Korean Enterprise.

Hwang, Joon-sung*

ABSTRACT

We are making an effort to enter the world market by raising trust in accounting transparency based on IF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problem that might be resulted from the introduction of IFRS by examining the limit of measurement of fair value. The limit of fair value measurement is a falling of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subjectivity of measurement, and difficulties in collecting market information. We need to make an appropriate explanation of the basis of subjective judgement. Also we need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financial products that is not transacted in the market. Finally we need to guarantee eligibility and independence of a valuer, and to strengthen supervisory organization.

Key Words : IFRS, measurement of fair value

*